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변호사 징계절차 이의신청 기간 연장〉

■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178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변호사 징계절차 이의신청 기간 연장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4인
2. 제안연월일 : 2025. 3. 20.
3. 회부연월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징계개시 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는 어떠한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보다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여 국민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의신청 기간을 징계개시 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합니다(안 제97조의5).

Ⅲ. 검토의견

1. 변호사 징계절차 이의신청 기간 연장

[illegible]

- 개정안은 징계개시 신청인으로부터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징계개시 신청을 기각하거나 신청 접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징계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징계개시 신청인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5제1항 후단).
- 이의신청 제도는 일정한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절차이나, 현행법 제97조의5에 규정된 이의신청 제도는 징계 처분의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개시 신청이 기각되거나 청구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징계개시 신청인이 행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이의신청 제도와는 그 내용을 달리함.

현행법 제89조의4, 제97조의2 및 제97조의4¹⁾ 등에 따르면, 징계

1) 「변호사법」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④ 윤리협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⑤ 윤리협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9조의4제4항(제89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7조의2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97조의3제3항에 따른 재청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회의 위원장이나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개시 신청인은 윤리협의회 위원장, 지방검찰청검사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임²⁾.

- 현행법에 따르면 징계개시 신청인은 기각통지를 받는 날 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신청인의 이의신청권 행사에 장애가 되고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어 그 기간을 30일로 연장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또한, 변호사 징계제도는 변호사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개정안을 통해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사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징계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는 행사 주체가 일반 국민이 아니라 지방검찰청검사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공적 권한과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의뢰인 등 일반 국민의 경우 징계개시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징계개시 신청인’은 아니며, 법 제97조의3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청원’할 수 있고, 이 청원이 기각되거나 청원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재청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필요가 있음.

즉, 징계개시 신청인이 일반 국민이라는 전제하에 14일의 기한이 짧다는 논거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법률관련 전문기관에 적용되는 권리 행사 기한을 30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이의신청 기한을 연장할 경우 오히려 변호사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징계절차는 신속한 사실 확인과 징계 여부 판단이 중요한 만큼 신청인의 권리 보호와 함께 징계제도의 신속성과 실효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14일과 비교할 때 개정안과 같이 30일로 연장될 경우 변호사 징계여부 결정이 더욱 늦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법원행정처는 충실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필요성,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 법 개정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의신청은 징계개시 신청이 기각되거나 무응답인

경우 신청인이 불복하는 절차로서 민·형사소송의 상소기한과 비교해도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재청원인의 경우 이미 지방 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친 절차 이후에 불복하는 것이므로 14일의 준비기간이면 충분하다는 점, 또한 이의신청권자에는 지방 검찰청검사장, 공수처장 등 전문기관이 포함되므로 이들에게까지 30일의 기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 아울러 징계 대상자인 변호사 입장에서는 장기간 징계절차가 지속될 경우 불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 6788-5060